학생생활상담 운영위원회 규정

2017.12.04. 제정 2021.02.25. 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학생상담센터(이하 "센터" 라 한다)의 운영 및 학생상담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관장하기 위해 설치한 학생상담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1.02.25.>
- 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학생상담센터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1.02.25.>
 -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임기는 보직 임용기간으로 한다.
- 제3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, 의장이 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.
- 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02.25.>
 - 2. 센터의 운영성과 평가 및 환류개선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02.25.>
 - 3.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<개정 2021.02.25.>
- 제5조(사무) ① 위원회의 사무는 학생상담센터가 담당한다. <개정 2021.02.25.>
 -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 게 보고하고 보관한다.
- 제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